

의안번호	2206705
의 퇴 인	권칠승의원
회 답 일	2025.1.7.
추계번호	24B608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의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환경부장관은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제1항) ○ 안전기준은 공동주택·상가·오피스텔·주택 등의 장소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제3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4조의5제1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 안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마련 및 점검, 실태조사의 대상 및 범위가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확대될 경우 추가제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수행하고 있는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추계에서 제외함 ○ 환경부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제도운영」 사업을 통해 매년 전국 기초지자체에 등록된 수집·운반업체 대상 안전기준 제도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며 해당 예산은 2025년 기준 1억 8,200만원임¹⁾
2	안 제14조의5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안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안 제14조의5제3항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장소 유형별로 적용되어야 하는 수집·운반 차량의 종류(카고트럭, 짐게차, 이륜차량 등), 차량 대수, 차량의 용량, 필요 작업 인원 수, 차량안전장치 설치 비용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는 예측이 곤란하여 합리적 추계가 어려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환경부는 동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업무를 한국폐기물협회에 위탁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동법 제14조의5 및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차량안전장치, 보호장구, 안전 수칙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 및 조사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